

-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-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4.28.)로 결정된 창신동 464-6번지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6일
종로구청장

가. 제한지역

- 구역명 :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
- 위치 : 창신동 464-6번지 및 390-12번지 일대 (세부위치는 지형도면 참조)
- 면적 : 18,932.5㎡

나. 제한사유

-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
- 이 일대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로 현재 정비계획 수립(변경) 중에 있어,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무분별한 투기수요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.

다. 제한기간

-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
[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질 경우, 행위제한 즉시 해제]

라. 제한대상행위

-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(※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)

구분	신축	증축	개축	재축	대수선	용도변경	공작물의 설치
허용 여부	불허	일부 허용	일부 허용	허용	허용	허용	불허

※ 세부내용

① 증축(일부), 개축(일부), 재축 : 건축위원회(건축계획전문위원회 자문) 거쳐 허가 여부 결정
 · 설계서, 주변과 어울림, 구조안전, 옥외간판 등 제시

② 증축(일부) 허용범위
 · 건축물의 기능향상(비상계단, 연결통로, 에스컬레이터,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)이 필요한 경우 (단, 단층건축물은 건폐율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)
 · 위생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화장실, 조리장 등

③ 개축(2층 이하) 허용구조 : 철거가 용이한 구조(조적조 등)

마. 관계도서

-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, 문의 ☎02-2148-2693)

